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4864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민법 제428조, 제59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486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8. 8 선고 2001나477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A 담당변호사 임BA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8. 8. 선고 2001나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AA은행,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외 DA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부 주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의 보증부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제15조 제7호, 제8조 소정의 면책사유('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취급제한에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은 보증사고가 해소된 이후의 대출이어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가 기존의 보증부대출금 5억 6천만 원을 그 만기일인 1997. 10.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1997. 11. 3. 보증금지업체로 전산등록된 사실, 원고는 주택금융신CA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지위[원고는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와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주택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며, 1998. 5. 25. 위 법률의 개정으로 보증기금 관리기관이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어 피고가 원고의 보증기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에서 이 사건 대출일인 1997. 11. 7.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09:25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의 보증부대출 원리금 563,336,986원을 실제로 상환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가 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전산 처리한 사실, 같은 날 12:08 소외 회사의 대출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58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중 보증료 2,5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4,411,121,234원을 소외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회사가 기존의 보증부대출금 5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상환한 것으로

대환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출 당시 기존의 보증부대출금 5억 6천만 원이 지점장 전결로 만기 연장을 통한 정상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행된 것인 이상 보증부대출 취급제한 규정에 위배된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함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 대출이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는 판단의 한 근거로 판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약관 제15조 제7호, 제8조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전산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록 지역본부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산등록이 실행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사실, 원고의 업무처리에 있어 신용보증 업무와 주택자금 대출 업무는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원고와 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원고의 소재지, 실무담당자, 최종결재권자가 동일하였으며, 각 지점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보증심사 담당을 겸하는 등 대부분 대출담당자가 보증기금 업무를 겸직하였고 보증기금업무는 대출업무에 부수되는 절차에 불과하거나 또는 대출승인이 보증승인과 사실상 동일시되고 있었던 사실, 신용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주택금융기관이 보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증기금은 주택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보증사고를 일으킨 보증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주택금융기관)는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증사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발급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약관 제15조 제7호, 제8조의 면책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증책임의 면제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약관 제15조 제7호,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이상 피고가 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증기금과 주택금융기관의 관계 및 업무의 인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보증담당 직원들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기금이 보증료로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던 원고 역시 소외 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으며, 보증담당 직원들이 보증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위배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면책사유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